

受 信 :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委員長

1994. 9.

題 目 :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관한 書面
動議書 提出

위의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에 관한
書面動議書를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
別添과 같이 提出합니다.

添 附 : 書面動議書 1部. 끝.

動議者 林憲鍾 懇意

外二人

(動議者 署名 : 別添)

동 의 자 서 명

動議書

1. 提案理由

大田直轄市市史編纂에 이어 分類史의 深層研究 · 發刊事業을 推進 함에 있어 市史編纂委員會 委員을 增員하여 研究分野를 넓히고 市史編纂 事業이 長期間이 所要되는 事業이므로 委員의 任期를 延長 調整하여 市史編纂 事業 推進에 圓滑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2. 主要骨子

- 가. 委員會의 機能中 市政弘報 機能을 削除함 (案 第2條 2號)
- 나. 委員會의 構成員을 20人以內에서 25人以內로 增員하여 다양한 分野의 專門人士를 確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(案 第3條 第1項)
- 다. 委員의 任期를 2年에서 3年으로 延長하여 長期間 所要되는 事業을 차질없이 推進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案 第3條 第2項)
- 라. 常任委員은 委員會 委員中에서 委員會의 推薦에 의하여 市長이 委嘱하도록 하고자 함 (案 第6條 第2項)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호중 “시정홍보 및 향토문화”를 “향토문화”로 한다.

제3조 제1항중 “위원 20인이내로”를 “위원 25인이내로”로 하고, 동조 제4항중 “위원의 임기는 2년”을 “위원의 임기는 3년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1항중 “연구원 2명을 두며, 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”를 “연구원 2명을 둔다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”를 “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”로 한다.

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직할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전에 위촉된 위원 (상임위원을 포함한다)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·구 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/p> <p>2. 시정홍보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·편찬활동</p>	<p>제2조 (기능) -----</p> <p>-----</p> <p>2.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·편찬활동</p>
<p>제3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<u>20인</u>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④위원의 임기는 <u>2년으로</u>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 (구성) ① -----</p> <p>----- 위원 <u>25인</u>이내로</p> <p>-----</p> <p>④ ----- <u>3년으로</u> -----</p> <p>-----</p>
<p>제6조 (상임위원 및 연구원) ①시사편찬의 운영, 자료수집, 조사, 정리 및 연구를 위해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2명을 두며, 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p> <p>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, 연구원은 대전직할시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장이 채용한다.</p>	<p>제6조 (상임위원 및 연구원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둔다.</p> <p>② ----- 위원회 위원증에서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-----</p> <p>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 (실비변상)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출석 및 시사편찬 업무와 관련되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직할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공무로 출장할때는 대전직할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여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정액은 4급 지방공무원 상당액으로 한다.</p> <p>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 (실비변상)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“대전직할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(삭 제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부 칙</p> <p>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</p> <p>② 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전에 위촉된 위원(상임위원을 포함한다)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/p>